

제1차 ICN 총회 이남기 위원장 기조연설 및 한·호주 경쟁정책협력약정 체결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7일(금)~29일(일)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개최된 제1차 ICN 총회에 참석하여 29일 “향후 ICN의 논의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이남기 위원장은 이 연설에서 향후 ICN에서 다룰 논의주제는 대다수 경쟁당국들의 공통된 관심 분야로서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실제적인 이슈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 후 2004년 제3차 ICN 연차총회의 서울 개최 계획을 설명하고 회원경쟁당국들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합병규제절차 및 심사기준의 국제적 조화, 경쟁당국의 경쟁주창역할(경쟁지향적 개혁을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논의될 작업주제의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경쟁법 선·후진국간 활발한 대화가 가능한 이슈가 우선, 둘째, 출범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회원국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진 분야부터 접근, 셋째, 비교적 단기간에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이슈부터 논의 등의 원칙들을 강조하였다.

한편, 기조연설에 앞서 이남기 위원장은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의 Allan Fels 위원장과

만나 “경쟁법 집행과 관련한 한·호 협력약정”에 서명하였는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의 조사 등 법집행 활동과 관련하여 정보 및 협조를 상호 제공키로 두 기관이 약속한 것으로서 1990년대 이후의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공정위가 체결하는 최초의 양자협력협정이다. 동 협정에 따라 양국 경쟁당국은 일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 요청국의 국내법 또는 중요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정보 및 협조를 제공하게 되고, 법 위반혐의의 조사나 기타의 법집행 조치가 상대방 국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상대방 국가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해당 조치의 내용을 통보하며, 상호 이익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정보제공, 조사협조, 법집행 공조 및 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내법 또는 중요 이익과 상반될 경우 상대방이 비밀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호주와의 양자협력협정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중요한 협력 대상국인 미국, EU 등과의 양자협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국제경쟁네트워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정책(경쟁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각국 경쟁당국간의 협의체로서,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경쟁정책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하고 경쟁문화를 전세계로 확산시키려는 목적으로 작년 10월에 출범

대부(사채)거래『표준약관』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사채)거래에 있어서 사업자와 소비자(채무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건전한 계약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대부(사채)거래 표준약관”을 2002. 9. 26. 승인하였다.

동 표준약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을 의무화함으로써 채무자가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을 분명히 하도록 하고, 둘째, 이자율(연체이자율 포함)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정하되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선이자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이자로 보도록 하며, 셋째,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 대부업자와 채무자가 각각 보관함으로써 분쟁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고, 넷째, 대부업자의 채권확보를 위한 개인정보 요구범위를 제한

하였다.

다섯째, 대부업자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를 제한하고,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채무이행지체 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할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여섯째, 채무자가 기한전에 임의로 변제할 경우, 대부업자가 받을 손해에 대하여 미리 약정하거나 이에 관한 규정을 고지한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 등을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일곱째,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영수증 등 서면교부 의무화, 주소변경 등에 대한 통지 의무, 채권양도시 채무자 및 보증인의 동의를 의무화하였다.

해외유학 및 어학연수, 학원분야의 경쟁제한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유학 및 어학연수, 학원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유학협의회의 획일적인 수속비(수수료) 책정 등 경쟁제한행위와 대형 입시학원의 불공정한 수강료 불반환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는 한편, 해외유학 및 어학연수분야의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하였다.

공정위는 한국유학협의회가 회원인 유학원들이 해외유학 및 어학연수 수속 대행과 관련하여 받아

야 할 「표준수속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회칙 및 윤리강령상에 준수를 의무화하고, 덤픽하는 유학원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경고조치 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등 수속비를 일정수준으로 결정·유지토록 한 경쟁제한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회원 유학원에 대해 일정금액(5만원) 이상의 경품제공을 금지토록 하는 사업활동제한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였다.

또한 대형 입시학원인 대성학원과 대학학원에

대해서는 「수강영수증」 등 약관상에 규정한 수강료 불반환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토록 시정조치하였다.

공정위는 연간 15만명 이상이 해외로 출국하고 있는 해외유학 및 어학연수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사례(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님)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한국유학협의회 및 소비자보호원 등과 협의를 거쳐 유학·어학연수 수속업자 및 단체가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 성격의 “공정경쟁실천강령” 및 관련분야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 등을 마련·시행키로 하였다.

2002. 9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

공정위는 2002년 9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난 9월 1일자로 변동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2년 9월중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수는 365개에서 364개로 1개사가 감소하였고,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제외)의 계열회사수는 2002. 10. 1. 현재 364개로 변동이 없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수는 2002. 9. 2. 현재 729개에서 (신규편입 5개사, 계열제외 6개사) 2002. 10. 1. 현재 728개로 1개사가 감소하였다.

2002. 9월중 계열사 변동 개요

기업집단	2002. 9. 2.	편 입			제 외						증감	2002. 10. 1
		회사 설립	주식취득 및 기타	계	합병	매각	청산	친족 분리	기타	계		
전 체	729	3	2	5	1	2	0	3	0	6	-1	728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365	-	1	1	1	1	-	-	-	2	-1	364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	364	3	1	4	-	1	-	3	-	4	0	364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제외

2002. 9월중 계열사 변동 내용

- 편입 : 5개사(주식취득 2, 회사설립 3)
- 제외 : 6개사(합병 1, 지분매각 2, 친족분리 3)

기업 집단	편 입			제 외		
	회사명	업종명	사 유	회사명	업종명	사 유
에 스 케 이	라이코스 코리아(주)	전자상거래	지분취득	케어베스트(주)	전자상거래	피합병
롯 데	(주)미도파	백화점	"	-	-	-
대 림	폴리 미래판매(주)	합성수지 판매 등	회사설립	-	-	-
코오롱	코오롱 씨앤씨(주)	부동산업	"	-	-	-
제 일 제 당	(주)엠디원	판매관리 서비스업	"	엔프라니(주)	화장품 제조 · 판매	지분매각
케이티	-	-	-	(주)케이티 인포텍	컴퓨터시스템 설계자문	"
태 광 산 업	-	-	-	페이토(주)	청소 · 경비 용역업	친족분리
대 성	-	-	-	(주)모토닉	자동차부품 제조업	"
				대성정기(주)	자동차부품 제조업	"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 에스케이, 케이티